

런던의정서에서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병호 · 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A Study on the Role of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for the London Protocol

Byung-Ho Moon and Gi-Hoon Hong[†]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san Sa Dong 1270, Kyonggi 425-600, Korea

요 약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정부간 회의에서 런던협약이 체결되었고 1996년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특별회의에서는 폐기물 처리·처분 기술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 협약의 전면 개정해 런던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구체적으로 해양투기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준수그룹이 설치되었다.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유엔 지역그룹 별로 선출된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준수위원을 배출하였다. 지리적·정치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는 지역그룹체제의 도입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의정서 관련 회의들에서 지역그룹별 투표 블록을 형성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국가들로 구성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조약 (OSPAR)에서 1992년에 채택한 심의 허용 품목 이외의 포괄적 투기 금지 방식을 런던의정서에서 도입한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의정서는 최근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물적, 인적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그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런던의정서 회의들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t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held in 1972, the London Convention was adopted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fter that, at the special meeting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 1996, the London Convention was revised to consider advances in technology of treatment and disposal of wastes and to reflect changes in understanding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n the London Protocol was concluded. The London Protocol states more concrete management system for ocean dumping than the London Convention and also provides that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those procedures and mechanisms necessary to assess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tocol. With the London Protocol in force since 24 March 2006,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adopted the ‘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s (CPM)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1972’ and established the Compliance Group in 2007. According to the CPM, members of the Compliance Group shall be nominated by Contracting Parties, based on equitable and balanced ge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United Nations, and elected by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In 2009, the Republic of Korea nominated a member of the Compliance Group to be subsequently elected by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approval of other states in Asia Group.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based on geographical identity or political affinity, Contracting Parties to the London Protocol are expected to form a voting bloc or to exchange information in meet-

[†]Corresponding author: ghhong@kordi.re.kr

ings on the London Protocol. In this sense, it is noteworthy that the London Protocol introduced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with exception of the so-called 'reverse-list' which had been earlier adopted by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2 (OSPAR)' whose contracting parties belonged to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Group. In recent years, the jurisdiction of London Protocol has been extende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ll sources of pollution. This will make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play more important roles in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London Protocol.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has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and has analyzed influences of this Regional Group System in meetings on the London Protocol. This could provide preliminary inform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on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London Protocol.

Keywords: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투기(Dumping), 준수그룹(Compliance Group), 유엔 지역그룹체제(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1. 서 론

해양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유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는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들이 국내법을 통해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투기를 한다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 해양투기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적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다.¹⁾ 따라서 해양투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구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요청으로 1972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협약²⁾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런던협약은 당사국들에게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국내 관할당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해양투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런던협약의 접근 방식은 금지되지 않은 품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다양한 종류

의 폐기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런던협약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홍[2009]).

한편, 유엔은 1982년에 해양법협약³⁾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들과 함께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⁴⁾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또한 1993년에 러시아는 지난 30여년 동안 구조련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는데, 이 영향으로서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1995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Kite-Powell *et al.*[1998]).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1996년 11월에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런던의정서⁵⁾가 채택되었다.⁶⁾ 런던의정서는 '의정서(Protocol)'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런던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수정하여 새로 작성된 조약이다(김[2001]). 또한 런던협약과 비교해 볼 때 런던의정서는 투기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더욱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국제조약이며(백[1999])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넓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⁷⁾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런

¹⁾비록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58)'에서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 1958)' 제25조 1항은 방사성 폐기물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이는 해양투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 대한 국가들의 이행도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양투기에 관한 실효적인 국제법이라고 볼 수 없다.

²⁾런던협약의 정식 영문 명칭은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이다.

³⁾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식 영문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이다.

⁴⁾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14개국의 국가정상과 183개국의 정부대표, 그리고 3만여 명의 환경전문가 및 민간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서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린다.

⁵⁾런던의정서의 정식 영문 명칭은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이다.

⁶⁾런던의정서는 1997년 덴마크, 1998년 독일, 남아프리카, 영국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6년 2월에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멕시코가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3월 24일에 발효하였다.

⁷⁾런던의정서는 해양투기 규제를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이지만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동 의정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런던의정서의 목적은 해양오염의 형태가 항상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양오염이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런던의정서가 최근에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해저저질구조 격리를 허용하였으며 또한 해양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대기중 이산화탄소 함량을 감소하려는 해양시비(海洋施肥) 활동에 관한 사안들을 동 의정서의 관할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던협약에 가입하였고 런던의정서에는 2009년 1월에 가입하여 동년 2월 21일부터 당사국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⁸⁾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준수그룹(Compliance Group) 위원을 배출하였는데, 이 때 우리나라는 당사국회의에서 준수위원을 선출하기 이전에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런던의정서 당사국인 아시아 그룹 국가들에게 준수위원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의 협력을 이룬 최초의 사례라고 여겨진다.

한편, 런던의정서에서 준수그룹의 구성방식⁹⁾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엔 지역그룹체제는 다른 유엔 기구나 기관에서도 주로 선임의석의 배분을 위한 지리적 획정 방식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그룹체제는 단순히 의석 배분을 위한 지리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의에서 의제를 발굴하거나 다자간 협력 체제를 주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런던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입장을 회의에 반영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효율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역그룹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소고에서는 런던의정서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역그룹별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 분포 현황, 그리고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기관, 국제환경법에서의 지역그룹별 선임 의석의 배분 방식에 관해 분석하고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역할과 의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의 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2. 런던의정서의 최근 동향

2.1 물적 관할범위 확대

2006년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런던의정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구 기후변화와 해양 표면 산성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해저지질구조 격리 사업¹⁰⁾이 논의되었으며(홍 *et al.*[2005]) 이산화탄소 스트림(carbon dioxide streams from carbon dioxide capture process for sequestration)이 해양투기 가능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해수를 주요 관할대상으로

삼던 종래의 런던협약과 달리 런던의정서의 물적 관할범위가 해저(seabed)와 하층토(subsoil)로 확장되어 해저면 아래의 수백, 수천 미터에 위치한 해저지질구조(sub-seabed geological formation)를 포함하도록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¹¹⁾

런던협약 및 의정서 합동당사국회의는 또한 2007년부터 대기중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 중 하나인 해양시비 활동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홍 *et al.*[2008]). 동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해양시비 활동의 효율성이나 잠재적 악영향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하고 해양시비 관련 활동들을 관리, 규제하기 위한 법적체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런던협약 및 의정서 합동당사국회의에서는 해양시비 활동의 관리를 런던의정서의 관할범위로 인정하고 해양시비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¹²⁾ 또한 동 당사국회의는 예외적으로 해양시비에 관한 합법적인 과학연구 활동만을 허가하기로 하고 향후에 이러한 과학연구 활동들에 대한 심의 체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런던의정서의 최근 논의들로부터 추론해 볼 때, 런던의정서의 목적은 종래의 해양투기 관리에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라는 포괄적인 목표로 확장되고 있다.

2.2 인적 관할범위 확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이나 환경 기준, 오염 규제 조치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확립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백[2005]). 해양투기 사안과 관련해 이러한 국제규칙과 기준이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통해 확립된 것들이다(홍[2009]).¹³⁾ 즉, 유엔해양법협약에 비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체제를 수립,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런던의정서는 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당사국들의 의정서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준수에의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해 준수그룹을 운용하고 있다.¹⁴⁾

그러나 2010년 1월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160개국에 비해¹⁵⁾ 런던협약의 당사국은 86개국이고¹⁶⁾ 런던의정서의 당

⁸⁾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런던의정서 가입서를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의정서는 2009년 2월 21일에 조약 제1933호로 발효되었다.

⁹⁾ 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1972, Article 3.3.

¹⁰⁾ 이산화탄소 해저지질구조 격리란 적합한 해저지질구조(해저 800 m 이상 깊이의 지층, 주로 심부 대수층)에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주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¹¹⁾ 물적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런던협약은 제III조 3항에서 '국가의 내수(internal waters)를 제외한 모든 수역'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런던의정서는 제1조 7항에서 '국가의 내수(internal waters)를 제외한 모든 해양 수역과 그 해저, 하층토'를 관할대상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¹²⁾ IMO, 2008, Report of the Thirtieth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Third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30/16, 19-22.

¹³⁾ 그러나 국제법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불권성을 고려해 볼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런던의정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는 별개의 조약이므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이에 가입해야 한다.

¹⁴⁾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 절차나 기구의 발달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재에도 당사국들의 조약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비준수 상태를 준수 상태로 회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¹⁵⁾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status2010.pdf 참조. 2010년 6월 28일 방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중에서 쿡 아일랜드, 니우에, 키리바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어떠한 지역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다. 쿡 아일랜드와 니우에는 아직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고 유럽연합은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국가 지위를 갖지 않는 지역 공동체이다.

¹⁶⁾ IMO, 2009, Status of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LC31/2, 1-5.

Table 1. Status of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by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s at 29 June, 2010)

Regional Group	Member of the UN	Coastal States	Contracting Parties of the UNCLOS	London Convention				London Protocol			
				Contracting Parties (Coastal States)	Rate of Participation (Coastal States)	Contracting Parties (Coastal States)	Rate of Participation (Coastal States)				
Africa	53	38	44	15	(15)	28.3%	(39.4%)	5	(5)	9.4%	(13.1%)
Asia	53	43	39	17	(16)	32.0%	(37.2%)	7	(7)	13.2%	(16.2%)
Eastern Europe	23	14	22	11	(7)	47.8%	(50.0%)	3	(3)	13.0%	(21.4%)
Latin America and Caribbean	33	31	28	19	(18)	57.5%	(58.0%)	5	(5)	15.1%	(16.1%)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28	22	23	22	(20)	78.5%	(90.9%)	17	(15)	60.7%	(68.1%)
States not in any regional group	2	2	1	2	(2)	100.0%	(100.0%)	0	(0)	0.0%	(0.0%)
Total	192	150	157	86	(78)	44.7%	(52.0%)	37	(35)	19.2%	(23.3%)

Note: Among the 160 Contracting Parties to the UNCLOS, Cook Islands, Niue, European Union are non-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사국은 37개국에 불과하다.¹⁷⁾ 이에 따라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006년에 런던의정서가 발표한 이래 신규 당사국 확보 문제를 정규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해 왔는데¹⁸⁾ 유엔 회원국들의 지역그룹별 런던의정서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¹⁹⁾

아프리카 그룹에서 런던협약 당사국은 15개국이고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은 5개국이다. 내륙국 중에서 런던협약이나 의정서에 참여한 국가는 없고 연안국들의 런던의정서 가입률도 낮다. 즉, 아프리카 그룹은 남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앙골라, 시에라리온 등 5개 국가들만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9.4%이고 런던협약 가입률은 28.3%이다.

아시아 그룹은 아프리카 그룹과 동일한 수의 구성국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안국의 비율이 아프리카보다 다소 높다. 아시아 그룹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마셜군도, 통가, 바누아투 7개 국가가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13.2%이고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도 17개로서 가입률이 32%이다. 그리고 내륙국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이 1975년에 런던협약에 가입하였다.

동유럽 그룹의 경우에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그루지아의 3개의 국가들만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1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내륙국들이 런던협약에 가입하는 등 총 11개 국가들이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 가입률은 47.8%이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31개의 국가들이 모두 연안국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지역 그룹에서 멕시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바베이도스, 트리니

다드토바고의 5개 국가들만 런던의정서에 가입했고 가입률은 15.1%이다. 이에 비해 런던협약 가입률은 높은 편이어서 내륙국인 볼리비아를 포함해 총 19개 국가들이 런던협약의 당사국으로서 57.5%의 가입률을 나타낸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은 다른 지역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영국의 17개 국가들이 런던의정서 당사국이고 가입률이 60.7%이다. 이는 2010년 1월 현재 런던의정서 당사국 수의 45.9%에 해당한다. 또한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내륙국들을 포함해 22개의 국가들이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 가입률이 78.5%로서 런던의정서와 마찬가지로 높다. 한편, 지역그룹체제의 역외국인 미국과 키리바시는 모두 런던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런던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런던의정서 가입률은 5개의 지역그룹 중에서 아프리카 그룹이 9.4%로 가장 낮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가입률이 60.7%로 가장 높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그룹들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런던의정서 평균 가입률인 19.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을 제외한 지역그룹들의 의정서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1)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지 않거나, (2) 해양 투기 방지에 대한 당해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혹은 (3) 런던의정서가 요구하는 고도의 환경관리 역량이²⁰⁾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¹⁷⁾ IMO, 2009, Status of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LC31/2/1, 1-3.

¹⁸⁾ 한편, 2009년 런던협약 및 의정서 합동당사국회의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핀란드, 칠레, 우루과이, 태국, 알제리 등과 같은 국가들이 런던의정서를 가입 혹은 비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¹⁹⁾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coastal state)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124조에서 내륙국(land-locked state)을 '해안을 갖지 아니한 국가(a State which has no sea-coast)'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연안국의 의미를 지리적 측면에서 해양과 접해 있는 국가 또는 해양으로 둘러싸인 국가로 이해하였다.

²⁰⁾ 런던의정서는 부속서 2에서 폐기물과 기타 물질에 대한 평가 체제 (Assessment of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를 마련하고 투기 허가 심사를 8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를 허가하는 국내 관할당국은 (1) 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적 특성을 규명하고, (2) 폐기물 방지 감시와 폐기물 관리 대안들을 고려하며, (3)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과 처리 기준을 비교하고, (4) 투기장소의 특성을 규명하며, (5) 투기로 인한 잠재 영향을 결정하여 영향 가설을 준비하고, (6) 투기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7) 투기 활동에 대한 허가 조건들을 시행하며, (8) 허가 조건들의 준수 여부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시해야 한다. 홍기훈, 2006,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및 투기해역 환경상태", 다자간환경협정의 준수: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백진현, 홍기훈 편집, 정인아이앤디, 174-175 참조.

3. 지역그룹체제의 현황과 선임의식 배분

현재 유엔 지역그룹체제는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그룹체제는 국제연맹에서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인 회의체제가 지난 50여년에 걸쳐 변모해 현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지역그룹체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 지역그룹체제 구성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3.1 지역그룹체제의 연혁

3.1.1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에서 회원국들은 기구나 기관의 구성을 위해 선임 의석들을 지역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즉 지역 구분의 필요성이 최초로 대두되었으며 국가들은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우호 관계에 따라 비공식적인 국가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Bailey[1964]). 국제연맹에서의 대표적인 국가그룹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로 구성된 국가그룹,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로 구성된 국가그룹, 발칸 국가그룹, 그리고 영국과 영연방 자치령들로 구성된 국가그룹 등이 존재하였다(Petersen[1986]).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간의 우호협약(Little Entente)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그룹은 공식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으며 각 국가그룹의 구성국에 관한 명확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연맹에서의 국가그룹은 현재의 지역그룹체제와 비교해 볼 때 비공식적인 느슨한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1.2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엔의 설립 초기에도 국제연맹 당시의 국가그룹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었다(Jennings[1999]). 즉, 유엔 헌장 제23조는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²¹⁾ 그러한 형평한 지리적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 국가들 간의 합의나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공식 국가그룹 형태로 운용되던 지역 구분 방식은 1957년에 이르러 캐나다 대표단이 당해 체제의 모호성을 지적함에 따라 동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를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그룹체제가 도입되게 되었다(Bailey[1964]). 즉, 총회는 동 결의를 통해 일반이사회(General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의 선임 의석을 지역그룹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이러한 지역

그룹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등 4개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각 지역그룹을 구성해 가입하였고 그 이후 대부분의 유엔 기관과 기구들에서는 ‘형평한 지리적 배분 원칙’으로서 이러한 지역그룹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를 거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가 진행되어 세계 국가 구성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1970년에는 현재와 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서로 구분하여 5개의 지역그룹을 기반으로 한 지역그룹체제가 새롭게 확립되었다(Jennings [1999]).²²⁾

3.2 지역그룹의 현황과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그룹체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등 총 5개의 지역그룹으로 구성되고 미국과 키리바시를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 지역그룹에 속해 있다. 런던의정서와 관련해 지역그룹체제의 역할과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므로 각 지역그룹의 구성현황에 관해서는 이를 연안국(coastal state)과 내륙국(land-locked state)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⁴⁾ 비록 내륙국도 해양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면서 해양환경에 대해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²⁵⁾ 해양투기 활동에 연루되어 직접적 이해를 가지는 것은 주로 연안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그룹의 구성현황에 관한 표 2를 살펴보면, 지역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룹이다. 아프리카 그룹에는 이집트, 남아프리카, 케냐 등 53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연안국은 38개국으로서 연안국의 구성 비율이 71.6%이다.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그룹에는 53개국이 속해 있고²⁶⁾ 그 중에서 43개 국가들이 연안국으로서 연안국의 구성 비율이 81.1%이다.²⁷⁾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은 33개국으로 구성되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이 연안국으로서 연안국 구성 비율이 93.9%로 가장 높다. 동유럽 그룹에는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등 23개 국가들이 포함되며 연안국은 14개국으로서 연안국의 구성 비율이 60.8%이다.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타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포함되어 28개국들이 속해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들 간의 정치적 우호 관계에 의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해 있는 상태이다. 그

²¹⁾ 유엔 헌장 제23조 1항은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고려 조건으로서 (1)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도(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2)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을 명시하고 있다.

²²⁾ United Nations, 1957, Composition of the General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GA/RES/1192(XII) (1957).

²³⁾ Journal of the United Nations는 1971년 이래로 매월 유엔 사무국에 통보되는 각 지역그룹의 의장국을 공시하고 있다.

²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coastal state)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124조에서 내륙국(land-locked state)을 ‘해안을 갖지 아니한 국가(a State which has no sea-coast)’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연안국의 의미를 지리적 측면에서 해양과 접해 있는 국가 또는 해양으로 둘러싸인 국가로 이해하였다.

²⁵⁾ 예를 들어 스위스는 해양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지만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장소로 대서양을 이용하였다. IAEA, 1999,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 IAEA-TECDOC-1105, 50-52 참조.

²⁶⁾ 팔레스타인은 실제로 아시아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소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²⁷⁾ 카스피해(Caspian Sea)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그룹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동유럽 그룹의 아제르바이잔 등 총 3개 국가들은 연안국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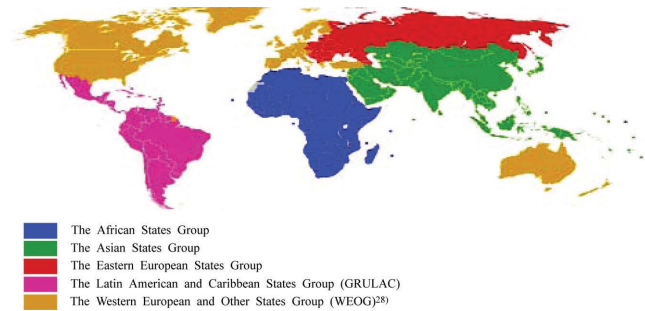


Fig. 1. Membership of Each UN Regional Group (courtesy from Lokal_Profil, WIKIMEDIA COMMONS).

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연안국은 22개이고 연안국 구성 비율이 79%이다. 동유럽 그룹과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은 다른 지역그룹들에 비해 구성 국가의 수가 적다. 한편 지역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역외국인 미국과 키리바시는 모두 연안국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지역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나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서 참가하고 있고 일부 경우에는 투표에도 참여하고 있다(Jennings[1999]). 그리고 키리바시는 본래 아시아 그룹의 구성국으로 활동하였으나 2006년 5월 이후부터 역외국으로 남아 있다.

지역그룹체제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역그룹체제는 그에 대한 개념이나 구분 기준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즉, 국제기구의 선임 의석 배분에 관한 결의나 결정에서 지역그룹이 명시되고 있고 또한 지역그룹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그룹이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그룹체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국가들 간에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70년대까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하나의 지역그룹으로 상정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부 국제기구와 기관에서는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²⁹⁾ 또한 각 지역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도 관련 문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그룹 의장국을 공시하는 유엔 문서인 Journal of United Nations는 아시아 그룹을 ‘아시아 국가들(Asian States)’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런던의정서의 문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그룹(Asian/Pacific Group)’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경우에는 지역그룹의 명칭에 ‘기타 국가들(Other Stat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각 지역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그룹체제는 오직 지리적 위치에 의해서만 확정되지 않고 국가들의 정치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속하지 않으나 정치적 우호 관계에 의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에 속해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그룹에 속해야 하지만 이란과 이라크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아시아 그룹에 가입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³⁰⁾

마지막으로 지역그룹체제는 구성국들에 대해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역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국가들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의 지역그룹에 속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 지역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가 당해 지역그룹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지역그룹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키리바시는 2006년에 아시아 그룹을 탈퇴하고 역외국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도 지역그룹에 속하지 않고 역외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터키의 경우에는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해 있지만 아시아 그룹의 활동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다(Jennings[1999]).

3.3 지역그룹별 선임 의석의 배분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가장 보편적인 역할은 국제기관이나 기구들의 다양한 임기직 임원들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 획정의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제기관과 기구들은 소수 국가들만으로 구성되는 운영조직의 의석을 각 지역그룹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의나 결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유엔 기구와 기관에서 주요 직위의 선출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그룹체제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교토의정서 등 다자간 조약에서 조직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그룹별로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의 구성 방식을 비교, 고찰하였다.

3.3.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주요기관들은 주요 직위의 선출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로 지역그룹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구, 국제사법기관 등 대부분의 유엔 기구와 기관들에서 이러한 지역그룹체제를 활용한다. 이 때 기구, 기관들의 의석 배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 비록 ‘Regional Group System’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원칙에 따라 의석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역그룹체제에 의한 의석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들의 관행이다.

유엔 주요기관에서의 지역그룹체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총회의 의장(President)과 부의장들(Vice-Presidents),³¹⁾ 그리고 총

²⁸⁾미국은 실제로 어떠한 지역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참관자로서 참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나 토론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으로 표시하였다.

²⁹⁾예를 들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부서들(IPCC Bureau and Task Force Bureau)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및 중부 아메리카, 남서 태평양, 그리고 유럽의 6개의 지역으로부터 선출된 29명의 위원들 및 지역 대표성을 갖지 않는 의장으로 구성된다. IPCC, 2006, Rules of Procedures for the Election of the IPCC Bureau and Any Task Force Bureau, IPCC-XXXI/Doc.15, 13-17.

³⁰⁾<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UN/weog.html> 참조. 2010년 2월 8일 방문.

Table 2.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as at 29 June, 2010)

Africa		Asia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Algeria ^{AS}	Madagascar ^{AS}	Afghanistan ^{AS}	Nauru ^{AS}	Albania ^{AS}	Lithuania ^{AS}	Argentina ^{AS}	Guatemala ^{AS}	Andorra ^{AS}	Liechtenstein ^{AS}				
Angola ^{SP}	Malawi ^{AS}	Bahrain ^{AS}	Nepal ^{AS}	Armenia ^{AS}	Macedonia ^{AS}	Bahamas ^{AS}	Guyana ^{AS}	Australia ^{AS}	Luxembourg ^{AS}				
Benin ^{AS}	Mali ^{AS}	Bangladesh ^{AS}	Oman ^{AS}	Azerbaijan ^{AS}	Montenegro ^{AS}	Barbados ^{AS}	Haiti ^{AS}	Austria ^{AS}	Malta ^{AS}				
Botsvana ^{AS}	Mauritania ^{AS}	Bhutan ^{AS}	Pakistan ^{AS}	Belarus ^{AS}	Moldova ^{AS}	Belize ^{AS}	Honduras ^{AS}	Belgium ^{AS}	Monaco ^{AS}				
Burkina Faso ^{AS}	Mauritius ^{AS}	Cambodia ^{AS}	Palau ^{AS}	Bulgaria ^{AS}	Poland ^{AS}	Bolivia ^{AS}	Jamaica ^{AS}	Canada ^{AS}	Netherlands ^{AS}				
Burundi ^{AS}	Morocco ^{AS}	China ^{AS}	Philippines ^{AS}	Croatia ^{AS}	Romania ^{AS}	Brazil ^{AS}	Mexico ^{AS}	Denmark ^{AS}	New Zealand ^{AS}				
Cameroon ^{AS}	Mozambique ^{AS}	Cyprus ^{AS}	Qatar ^{AS}	Czech Republic ^{AS}	Russia ^{AS}	Chile ^{AS}	Nicaragua ^{AS}	Finland ^{AS}	Norway ^{AS}				
Cape Verde ^{AS}	Namibia ^{AS}	Fiji ^{AS}	Samoa ^{AS}	Estonia ^{AS}	Serbia ^{AS}	Colombia ^{AS}	Panama ^{AS}	France ^{AS}	Portugal ^{AS}				
Chad ^{AS}	Niger ^{AS}	India ^{AS}	Saudi Arabia ^{AS}	Georgia ^{AS}	Slovakia ^{AS}	Costa Rica ^{AS}	Paraguay ^{AS}	Germany ^{AS}	San Marino ^{AS}				
Comoros ^{AS}	Nigeria ^{AS}	Indonesia ^{AS}	Singapore ^{AS}	Hungary ^{AS}	Slovenia ^{AS}	Cuba ^{AS}	Peru ^{AS}	Greece ^{AS}	Spain ^{AS}				
Côte d'Ivoire ^{AS}	Rwanda ^{AS}	Iran ^{AS}	Sri Lanka ^{AS}	Latvia ^{AS}	Ukraine ^{AS}	Dominica ^{AS}	Saint Lucia ^{AS}	Iceland ^{AS}	Sweden ^{AS}				
Djibouti ^{AS}	Senegal ^{AS}	Iraq ^{AS}	Syria ^{AS}	Bosnia and Herzegovina ^{AS}		Ecuador ^{AS}	Suriname ^{AS}	Ireland ^{AS}	Switzerland ^{AS}				
Egypt ^{AS}	Seychelles ^{AS}	Japan ^{AS}	Tajikistan ^{AS}			El Salvador ^{AS}	Uruguay ^{AS}	Israel ^{AS}	Turkey ^{AS}				
Eritrea ^{AS}	Sierra Leone ^{AS}	Jordan ^{AS}	Thailand ^{AS}			Grenada ^{AS}	Venezuela ^{AS}	Italy ^{AS}	United Kingdom ^{AS}				
Ethiopia ^{AS}	Somalia ^{AS}	Kazakhstan ^{AS}	Timor-Leste ^{AS}										
Gabon ^{AS}	South Africa ^{AS}	Kuwait ^{AS}	Tonga ^{AS}			Antigua and Barbuda ^{AS}							
Gambia ^{AS}	Sudan ^{AS}	Kyrgyzstan ^{AS}	Turkmenistan ^{A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AS}							
Ghana ^{AS}	Swaziland ^{AS}	Laos ^{AS}	Tuvalu ^{AS}			Saint Kitts and Nevis ^{AS}							
Guinea ^{AS}	Togo ^{AS}	Lebanon ^{AS}	Uzbekistan ^{AS}			Trinidad and Tobago ^{AS}							
Guinea-Bissau ^{AS}	Tunisia ^{AS}	Malaysia ^{AS}	Vanuatu ^{AS}			Dominican Republic ^{AS}							
Kenya ^{AS}	Uganda ^{AS}	Maldives ^{AS}	Vietnam ^{AS}										
Lesotho ^{AS}	Tanzania ^{AS}	Mongolia ^{AS}	Yemen ^{AS}										
Liberia ^{AS}	Zambia ^{AS}	Myanmar ^{AS}	Solomon Islands ^{AS}										
Libya ^{AS}	Zimbabwe ^{AS}	Brunei Darussalam ^{AS}	Marshall Islands ^{AS}										
Republic of the Congo ^{AS}		Papua New Guinea ^{AS}											
Equatorial Guinea ^{AS}		Republic of Korea ^{AS}											
São Tomé and Príncipe ^{AS}		United Arab Emirates ^{AS}											
Central African Republic ^{A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Note: *Superscript AS*, Coastal State bordering a ocean; *Superscript AS*, Land-locked State having no sea-coast; *Superscript S*, Contracting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Superscript C*, Contracting Party to the London Convention, 1972; and *Superscript P*, Contracting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1996.

States not in any regional group
 United States of America^{AS}
 Kiribati^{AS}

회 주요 위원회의 의장(Chairman)³²⁾들이 지역그룹체제에 근거해 선출된다. 또한 총회 기관으로서 설립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³³⁾ 국제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등도 기관 구성 원칙으로서 지역그룹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도 이사국 선출에 있어서 지역그룹체제에 의한 배분 방식을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5년 10월 유엔 설립 당시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선출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고 다만 유엔 헌장 제23조에서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을 고려하여 이사국을 선출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10개로 확대하는 총회 결의 1991(XVIII)이 채택되면서 이사국의 선출 방식을 지역그룹체제에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5개, 동유럽에서 1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2개,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2개 국가들이 각각 선출되게 되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2개의 이사국을 선출하고 남은 1개의 이사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룹이 교대로 선출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³⁴⁾

한편,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도 지역그룹체제에 근거해 선출되는데, 경제사회이사회 구성에 관한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847(XXVI)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은 아프리카에서 14개, 아시아에서 11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10개,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13개, 동유럽에서 6개의 국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등 경제사회이사회의 대부분 기관과 프로그램들도 다양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 지역그룹체제를 채택하고 있다.³⁵⁾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과 같은 유엔 전문기구들에서도 지역그룹체제는 주요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타 임원 선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사국들과 기구 간에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주요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³⁶⁾

상기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유엔 기구와 기관들에서 지역그룹체제는 선임 의석의 배분을 위한 지리적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임 의석의 수를 각 지역그룹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각 기구나 기관의 규정이나 관행이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그룹들이 모두 동일한 수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관련 국제기구의 특성이나 사안에 따라 조직을 형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 구성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별도의 조직 구성 기준으로서의 각 지역그룹 당사국의 수, 국가 경제 규모나 인구,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와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의석의 재분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의 논의, 그리고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이하에서 살펴보았다.

3.3.2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륙붕한계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운용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선출된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즉, 동 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에 의해 확립된 각 ‘지리적 그룹(geographical group)’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된다.³⁷⁾ 그러나 동 재판소 규정은 각 지역그룹이 모두 동일한 수의 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동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룹에서 각 5명, 동유럽 그룹에서 3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에서 4명,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4명이 선출되어 왔다(김[2008]).

그러나 2007년 제1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의석을 재분배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 지역그룹의 당사국 수에 비례하여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의석을 1석 줄이고 이에 따라 남은 의석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룹이 윤번으로 할당받을 것을

³¹⁾의장, 부의장, 그리고 주요 위원회 의장 구성에 관한 1978년 총회 결의 33/138에 따르면 총회 의장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중에서 형평한 지역적 순환을 고려하여 선출되며 총회의 부의장들도 지역그룹체제를 적용하여 아프리카 6명, 아시아 5명, 동유럽 1명,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3명,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중에서 2명이 각각 임명된다. 이 때 동 결의는 지역그룹의 명칭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본 소고에서는 지역그룹 의장을 공식하는 유엔 문서인 Journal of United Nations의 표기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tin America and Caribbean)’라고 표기하였다.

³²⁾총회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General Assembly) 제103조는 주요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에 근거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³³⁾즉, 국제법 위원회 확대에 관한 1981년 총회 결의 36/39에 따르면 국제법 위원회의 34명의 위원들은 아프리카에서 8명, 아시아에서 7명, 동유럽에서 3명,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6명, 서유럽 및 기타 국가들에서 8명이 각각 선출된다. 그리고 전역 위원들 중 1명은 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룹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며 다른 1명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 중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³⁴⁾지역그룹의 명칭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관한 1963년 유엔 총회 결의 1991 (XVIII)는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본 소고에서는 Journal of United Nations의 명칭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tin America and Caribbean)’라고 표기하였다.

³⁵⁾예를 들어 UNICEF의 집행위원회는 36개 회원국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1993년 총회 결의 48/162에 따라 형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에 근거하여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12개, 아프리카에서 8개, 아시아에서 7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5개, 동유럽에서 4개 국가들로 선출된다. 그리고 UNDP도 UNICEF와 같이 총회 결의 48/162에 의해 36개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가 동일한 지역적 배분 방식으로 구성된다.

³⁶⁾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의 최고사결정기구(Governing Body)는 28명의 정부 대표와 28명의 노사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8명의 정부 대표들 중에서 18명의 대표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등 4개 지역별로 나누어 선출된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구성을 위한 지역구분 방식은 통상적인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방식과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지역그룹체제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확립되지 않고 시대별로 변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기구 구성에 있어서 지역그룹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³⁷⁾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조.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이 유일한 의석 배분 기준은 아니며 전문성과 자질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였고 결국 동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석 재분배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³⁸⁾ 그리고 2009년 제19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로소 당사국들은 당해 기관들의 의석 재분배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아프리카 그룹에서 5개, 아시아 그룹에서 5개, 동유럽 그룹에서 3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에서 4개,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3개 의석을 선출하고 나머지 1개 의석은 아프리카, 아시아,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교대로 선출하게 되었다. 즉,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당해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유엔 지역그룹체제를 지리적 획정 원칙으로서만 활용하고 의석의 구체적인 배분은 표 3과 같이 당사국의 지역그룹별 비율에 따르게 되었다.

Table 3. Allocation of Seats on the ITLOS and the CLCS³⁹⁾

Regional Group	Contracting Parties of the UNCLOS (Rate of the members)	Allocation of Seats on the ITLOS and the CLCS (Rate of the Seats)
Africa	44 (27.5%)	5 (+ 1) (23.8% ~ 28.6%)
Asia	39 (24.3%)	5 (+ 1) (23.8% ~ 28.6%)
Eastern Europe	22 (13.8%)	3 (14.3%)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8 (17.5%)	4 (19.0%)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23 (14.4%)	3 (+ 1) (14.3% ~ 19.0%)
States not in any regional group	4 (2.5%)	- (0.0%)
Total	160 (100.0%)	21 (100.0%)

Table 4. Status of each Compliance Committee under the Kyoto Protocol (as at 30 January, 2010)⁴²⁾

Compliance Committee	Composition	Membership	Expiration (Year)	
Facilitative Branch	Members from Parties included in Annex I	Sweden	2011	
		Japan	2013	
	Members from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	2011	
		Macedonia	2013	
	Member from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uba	2011	
	Members from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UN	Africa	Algeria	2013
		Asia	Saudi Arabia	2013
		Eastern Europe	Russia	2011
		Latin America and Caribbean	Belize	2013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Belgium	2011
Enforcement Branch	Members from Parties included in Annex I	Switzerland	2011	
		Germany	2013	
	Members from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Tajikistan	2011	
		Nigeria	2013	
	Member from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ldives	2011	
	Members from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UN	Africa	South Africa	2013
		Asia	China	2013
		Eastern Europe	Russia	2011
		Latin America and Caribbean	Argentina	2013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Netherlands	2011

³⁸⁾UNCLOS, 2008, Report of the eighte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SPLOS/184, 11-19.

³⁹⁾UNCLOS, 2009, Report of the Ninete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SPLOS/203, 17-18.

⁴⁰⁾교토의정서의 정식 영문 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⁴¹⁾촉진부문 위원회는 준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권고나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강제부문 위원회는 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⁴²⁾http://unfccc.int/kyoto_protocol/compliance/items/5536.php 참조. 2010년 6월 29일 방문.

3.3.3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

본 소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런던의정서 이외에도 여타의 국제환경법들에서 지역그룹체제는 이행준수 기관의 구성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즉, 최근 다수의 국제환경법 회의에서는 조약의 준수를 감독하고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위원회 등을 설립, 구성하기 위해 지역그룹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행준수 기관의 구성을 위해 지역그룹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으로는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⁴⁰⁾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비준수 사례를 다루기 위해 2001년에 준수위원회 (Compliance Committee)를 설치하였으며 동 의정서 준수위원회는 촉진부문(Facilitative Branch)과 강제부문(Enforcement Branch)의 2개 위원회로 구분된다(홍 [2006]).⁴¹⁾ 그리고 이러한 준수위원회들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표 4와 같이 유엔의 5개 지역 그룹들에서 각 1명의 위

원을 선출하고 소형 도서 개발도상국에서 1명, 부속서에 포함된 국가들 중에서 2명,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들의 구성 방식은 유엔 지역그룹 체제에 근거해 선출되는 위원들과 국가의 경제 규모 혹은 산업 발전의 정도에 따라 선출되는 위원들이 함께 이행준수 기관을 구성하는 이원적인 선출 방식이다.

4.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의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지역그룹체제는 런던의정서에서 준수그룹의 구성 방식으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역할이나 기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즉, 국가들은 당사국회의에서 의제를 발굴하거나 관리체제의 발전을 주도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그룹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4.1 준수그룹의 구성

유엔 지역그룹체제는 런던의정서의 이행준수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다. 즉, 2007년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준수절차와 메커니즘(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 CPM)을 채택하고 조약의 이행준수 기관으로서 준수그룹을 설립하였는데,⁴³⁾ 이 때 준수그룹의 구성 방식을 지역그룹체제에 의거하도록 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당사국은 과학기술법률 전문가를 준수위원으로 추천하여 지역그룹 국가들의 동의를 얻은 후 당사국회의에 이를 제출하고 당사국회의는 형평하고 균형적인 지리적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그룹별로 각 3명의 준수위원을 선출하게 된다.⁴⁵⁾ 따라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등 5개 지역그룹으로부터 각 3명씩 총 15명의 준수위원들이 선출되는데,⁴⁶⁾ 2008년에 최초로 준수위원들이 선출되어 준수그룹이 구성되었고⁴⁷⁾ 2010년 1월 현재 표 5와 같이 총 7명의 위원이 임명된 상태이다.

앞서 살펴본 지역그룹 국가들의 런던의정서 가입률은 준수그룹의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라

Table 5. Status of the Compliance Group under the London Protocol (as at 30 January, 2010)

Regional Group	Membership	Expiration (Year)
Africa	-	-
Asia	Republic of Korea	2012
	China	2011
	Japan	2010
Eastern Europe	Bulgaria	2010
Latin America and Caribbean	-	-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Netherlands	2012
	Canada	2011
	Italy	2010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은 준수그룹의 위원 선출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아시아 그룹은 런던의정서 가입률이 낮은 편이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들로부터 준수그룹 위원 선출을 완료하였다.⁴⁸⁾

한편, 2007년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은 준수그룹의 구성 방식을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의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그룹별로 선출하는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Reporting and Compliance)은 각 지역그룹에서 동일하게 3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당사국회의에 제출하였고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이러한 작업반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즉, 런던의정서 준수위원의 지역그룹별 할당은 조약 규정이나 관련 절차 혹은 규칙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기보다 연구 검토 기관의 권고에 의해 관행으로서 확립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준수그룹이 확대되거나 혹은 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국회의는 조약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그룹별로 동일한 의식을 할당하여 준수그룹을 구성하는 런던의정서의 현재와 같은 방식은 조직을 형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의 의식 배분 방식과는 상이하 다.⁴⁹⁾ 현재의 런던의정서 당사국현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선출 방식에 따라 준수위원을 선출한다면 표 6과 같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다른 지역그룹들에 비해 준수위원 선

⁴³⁾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조약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보조기구로서 당사국들의 비준수 사안에 대한 원인과 상황을 확인,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사국회의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⁴⁴⁾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1972, Article 3.4.

⁴⁵⁾IMO, 2007, Report of the Twenty-Ninth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econd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29/17, 28-29.

⁴⁶⁾지역그룹의 명칭과 관련하여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문서는 ‘아시아·태평양 그룹 (Asian/Pacific Group)’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소고에서는 Journal of United Nations의 명칭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Asian States)’이라고 표기하였다.

⁴⁷⁾IMO, 2008, Report of the Thirtieth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Third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30/16, 30-36.

⁴⁸⁾IMO, 2009, Report of the Thirty-First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Four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31/15, 30-36.

⁴⁹⁾한편, 유해 폐기물의 환경성 이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채택된 바젤협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 협약은 2002년에 조약의 이행과 준수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이를 운용, 감독하기 위한 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이 때 이행과 준수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은 준수위원회 위원들이 유엔 5개 지역그룹들의 형평한 지리적 대표성(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을 근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0년 1월 현재 동 위원회는 런던의정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그룹별로 동일하게 3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어 구성되어 있다. 홍기훈, 2006, ‘런던의정서 준수 절차와 기구’, 다자간환경협정의 준수 :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백진현, 홍기훈 편집, 정인아이앤디, 45-106 참조.

Table 6. Allocation of Seats on the Compliance Group of the London Protocol

Regional Group	Contracting Parties of the London Protocol (Rate of the members)	Allocation of Seats on the Compliance Group (Rate of the Seats)
Africa	5 (13.5%)	3 (20.0%)
Asia	7 (18.9%)	3 (20.0%)
Eastern Europe	3 (8.2%)	3 (20.0%)
Latin America and Caribbean	5 (13.5%)	3 (20.0%)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17 (45.9%)	3 (20.0%)
States not in any regional group	0 (0.0%)	- (0.0%)
Total	37 (100.0%)	15 (100.0%)

출 경쟁이 가장 심할 것으로 여겨진다.⁵⁰⁾ 그러나 표 1에서 런던협약 당사국현황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지역그룹 구성 국가 수의 차이가 다소 낮기 때문에 향후 런던협약의 당사국들이 모두 런던의 정서에도 가입하는 경우에는 준수위원 선출시의 경쟁률 차이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또한 모든 지역 국가 혹은 연안국들이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유럽 그룹의 구성 국가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에 속한 국가들이 준수위원 진출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그룹에서 준수위원 선출 경쟁이 가장 높을 것이다.⁵¹⁾

그러나 런던의정서에서 준수위원을 상기와 같이 지역그룹체제에 의거해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가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서 이스라엘은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지역그룹체제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국제기구나 기관의 의석에 선출되지 못하였다.⁵²⁾ 따라서 현재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모두 각 지역그룹에 속해 있지만, 지역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미국이나 키리바시가 향후 런던의정서에 가입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현재 통용되는 관례로 보면 원칙적으로 준수위원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런던의정서의 당사국 수가 늘어나고 런던의정서의 관할범위가 확대될수록 준수그룹의 역할이나 기능도 중대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준수그룹의 인적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관할해역의 크기와 해양활동의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미국이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수그룹 인적 확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런던의정서의 준수그룹이 확대 운용되는 경우에는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와 같은 유엔 지역그룹체제에 근거해 선출되는 위원

들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출되는 위원들이 함께 준수그룹을 구성하는 이원적 선출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³⁾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그룹체제에 의한 동일한 수의 위원 선출 방법이 반드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구성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4.2 토론 및 협상의 창구

지역그룹체제는 또한 국제기구나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즉, 국가들은 어떤 현안에 관하여 당사국 전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지역그룹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국가들은 공동의 견해를 정리하고 지역그룹의 의사를 공식화하게 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이하에서 논의하게 될 ‘투표 블록 형성’의 사전 단계를 이루기도 한다.

런던의정서 준수위원의 선출 과정에서도 지역그룹체제는 단순히 기관 구성을 위한 지리적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간 협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준수위원을 배출할 당시 준수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다른 아시아 그룹 국가들의 사전 동의를 얻고 이를 당사국회의에 보고하여 선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준수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준수위원을 다시 배출할 가능성도 사우디아라비아, 마셜군도, 통가, 바누아투 등 다른 아시아 그룹 국가들의 입장과 지역그룹 내에서의 사전 협의에 달려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떤 당사국이 런던의정서에서 절차적 사항들을 사전 협의하거나 정책 토론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지역그룹의 구성국 지위가 요구되는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런던의정서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이 준수위원을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그룹의 토론이나 협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반드시 관련 지역그룹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들에서의 관행을 살펴보다도,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해 있는 터키가 아시아 그룹의 활동에 일부 참여한 사례가 있고 역외국인 미국은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토론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Jennings[1999]). 따라서 어떤 국가가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의 토론이나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그룹의 구성국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그룹 국가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역그룹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협상 과정에서 외부 국가의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⁵⁰⁾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준수그룹에서 과소 대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에서 이러한 준수그룹 구성 방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준수그룹의 상위 기구로서 당사국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수그룹에서의 과소 대표성이 당사국회의에서 보완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⁵¹⁾ 본 소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엔 기구와 기관들, 그리고 다자간 조약들에서 유엔 지역그룹체제에 따라 당사국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지역그룹별로 선임 의석의 수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기구, 기관, 조약들의 규정이나 관행이 상이하다.

⁵²⁾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UN/weog1.html> 참조. 2010년 2월 8일 방문.

⁵³⁾ ‘교토의정서 준수에 관한 절차와 메커니즘’ 제IV조 1항 및 제V조 1항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의 준수위원회들은 5개의 유엔 지역그룹들로부터 각 1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소형 도서 개발도상국에서 1명, 부속서 I에 포함된 국가들 중에서 2명,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2명을 선출하여 구성된다.

4.3 투표 블록(Voting Bloc)의 형성

지역그룹체제는 국제기구나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단 사전 협상과 토론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그룹 국가들 간의 투표 블록을 형성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지역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서 북동대서양 연안국들은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1972년 Oslo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1992년 OSPAR 협약으로 발전시키면서⁵⁴⁾ 런던의정서의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러한 지역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런던의정서의 의제를 발굴하거나 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하는 이들 국가들은 런던협약이나 런던의정서보다 강력한 해양투기 규제 체제를 확립, 운용하면서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이러한 지역조약들의 원칙들을 런던의정서에 반영하고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도모해 왔다.⁵⁵⁾ 향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런던의정서 관련 회의들에서 주요 쟁점 사안을 발의하거나 결의를 제안함으로써 런던의정서의 관리체제를 변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즉, OSPAR 협약이나 Helsinki 협약⁵⁶⁾ 등 각 지역해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확립되어 있는 지역조약들의 해

양투기 관리체제는 점차 런던의정서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992년 OSPAR 협약의 경우에는 표 7과 같이 15개의 당사국들이 모두 동일한 지역그룹에 속해 있고 핀란드, 포르투갈 이외에 모든 국가가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86.6%로서 높기 때문에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의 형성 운용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1992년 Helsinki 협약의 경우에는 총 9개의 당사국들이 표 8와 같이 각각 동유럽과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일의 지역그룹체제를 통한 투표 블록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Helsinki 협약에서 핀란드를 제외한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국가들이 모두 런던의정서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또한 모두 1992년 OSPAR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Helsinki 협약은 발트해에 경계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해역 관리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가장 엄격한 해양투기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⁵⁸⁾

런던의정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1992년 Helsinki 협약 당사국들로서는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 Helsinki 협약에 비금가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부담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강화하기를 희

Table 7. Contracting Parties to the 1992 OSPAR Convention

Regional Group	Contracting Parties of the OSPAR Convention	Number	Contracting Parties	
			London Convention (Rate of Participation)	London Protocol (Rate of Participation)
Africa	-	-	-	-
Asia	-	-	-	-
Eastern Europe	-	-	-	-
Latin America and Caribbean	-	-	-	-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Belgium, Finland, Spain, Luxembourg, Switzerland, United Kingdom, Portugal, Norway, Netherlands, Iceland, Ireland, Denmark, Germany, France, Sweden	15	15 (100.0%)	13 (86.6%)

Table 8. Contracting Parties to the 1992 Helsinki Convention

Regional Group	Contracting Parties of the Helsinki Convention	Number	Contracting Parties	
			London Convention (Rate of Participation)	London Protocol (Rate of Participation)
Africa	-	-	-	-
Asia	-	-	-	-
Eastern Europe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Russia	5	2 (40.0%)	0 (0.0%)
Latin America and Caribbean	-	-	-	-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Denmark, Finland, Germany, Sweden	4	4 (100.0%)	3 (75.0%)
Total		9	6 (66.6%)	3 (33.3%)

⁵⁴⁾Oslo 협약의 정식 영문 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 1972”이고, 1992년 OSPAR 협약의 정식 영문 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이다.

⁵⁵⁾이와 관련하여 1972년에 체결된 런던협약이 1972년 Oslo 협약의 관리체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1996년에 새롭게 채택된 런던의정서도 1992년 OSPAR 협약과 1992년 Helsinki 협약의 환경보호 관련 원칙들을 대폭 수용해 마련되었다. 즉, 런던의정서는 OSPAR 협약이나 Helsinki 협약의 관리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을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였고 해양투기와 해상소각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Reverse List 관리방식을 채택하였다.

⁵⁶⁾1992년 Helsinki 협약의 정식 영문 명칭은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1992”이다.

⁵⁷⁾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는 1992년 OSPAR 협약과 1992년 Helsinki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국가 지위를 갖지 않는 지역 경제공동체가기 때문에 본 소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⁵⁸⁾1992년 Helsinki 협약은 해양투기 가능 품목으로서 준설물질 만을 인정하고 해양투기 해역을 원칙적으로 내수와 영해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지역조약들 중 가장 엄격한 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할 것이다. 따라서 1992년 Helsinki 협약 당사국들은 1992년 OSPAR 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런던의정서의 형성·운용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역그룹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동유럽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추가로 런던의정서에 가입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두 개 지역그룹의 연계를 통해 더욱 커다란 투표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세계의 각 지역별로 해양투기 규제를 위해 확립되어 있는 지역조약들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는 국제조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향후 런던의정서의 개정 논의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조약들의 규제체제와 논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⁹⁾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태평양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1986년 Noumea 협약⁶⁰⁾을 체결하고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에 런던의정서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 협약에 대한 투기 의정서를 새롭게 개정,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oumea 협약과 동 협약 투기 의정서 당사국들의 런던의정서 가입률은 아직 24.0%에 불과하고 정치, 경제적 이해에 따라 동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역외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마살군도만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Noumea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남태평양 국가들이 유엔이나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구나 경제 생산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 협약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투표 블록을 형성할 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가 접해있는 황해와 동해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연안국들 간에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별도의 지역협력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¹⁾ 게다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연안국들 중에서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뿐인데 이들 국가들도 해양환경 관리 기술과 정치·경제적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일의 투표 블록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국가들 간에 신뢰 구축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동북아 지역 이익을 런던의정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투표 블록을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4 국가 협상력 제고

개별 국가는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국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개별 국가의 국가 협상력 제고 문제는 상기에서의 투표 블록 형성 논의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즉, 개별 국가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나 관련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지역국가들의 지지를 독려함으로써 투표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그룹체제를 통한 국가 협상력 강화 문제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런던협약의 사례로서 1993년 동해 북부에서의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 사건이 있다. 동 사건은 1993년에 개괄된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는 동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런던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동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기가 어려웠다(홍[2009]).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동 사건 당시에 런던협약의 당사국이었다면 그에 관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공조하여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런던협약에서의 사례는 런던의정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역그룹체제를 활용해 관련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가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동북아 연안국들 간에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5 정보 교환과 신규 당사국의 확보

지역그룹체제는 관련 국제기구와 당사국 간에 의견을 교환하거나 지역국가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구체적으로 지역 워크숍이나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지역국가들 간의 사전 협의, 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런던의정서의 경우에도 표 9와 같이 소규모 지역별 지역 워크숍(regional workshop) 등을 개최하여 지역국가들 간에 조약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의정서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였다.⁶²⁾ 런던의정서의 현안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당사국이나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워크숍들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1992년 OSPAR 협약과 1992년 Helsinki 협약 관련 회의

⁵⁹⁾ 이와 관련해 특히 1992년 OSPAR 협약이나 1992년 Helsinki 협약은 현재 하수오염의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런던의정서도 머지않아 하수오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계에서 하수오염을 해양에 처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 3개국뿐이고 그 중에서 일본은 하수오염의 해양처분을 금지하는 국내입법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3월에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하수오염의 해양처분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⁶⁰⁾ 1986년 Noumea 협약의 정식 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South Pacific Region, 1986”이다.

⁶¹⁾ 1974년 1월 30일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 협약 제20조에 의거해 마련된 ‘해수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교환각서’에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일부 대륙붕에 한정되어 있다.

⁶²⁾ IMO, 2009, Report of the Thirty-First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Four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31/15, 51-58.

Table 9. Regional Workshops on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held since June 2006

Region (Sponsor)	Period	Year	Host Country	States which had attended
East Asia (IMO/UNEP/SOA)	29 May to 2 June	2006	China	Cambodia,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onesia, Japan, Malays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ingapore, Thailand + Nine non-East Asian Countries
Red Sea (IMO/ROPME)	4 to 6 February	2007	Baharain	Iran, Oman, Quatar, United Arab Emirates, Saudi Arabia, Baharain
Eastern South Pacific (IMO/CPPS)	10 to 12 October	2007	Ecuador	Chile, Columbia, Ecuador, Panama, Peru
Black Sea (IMO/SMA)	15 to 17 December	2008	Azerbaijan	Azerbaijan, Bulgaria, Georgia, Iran, Kazakhstan, Romania, Russia, Ukraine
Latin America (IMO/MRA)	25 to 26 February	2009	Peru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Uruguay, Peru
South Pacific (IMO/SPREP)	4 to 6 March	2009	Fiji	Cook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Niue, Nauru, Palau,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Samoa
Mediterranean Sea (IMO/UNEP MEDPOL)	20 to 22 May	2009	Italy	Albania, Algeria,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Cyprus, Egypt, Greece, Israel, Italy, Lebanon, Monaco, Montenegro, Morocco, Spain, Syria, Tunisia, Turkey
Latin America and Caribbean (IMO/ROCRAM)	28 September to 2 October	2009	Uruguay	Cuba, Mexico, Panama, and all South American countries

Not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SOA,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ROPME,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CPPS, Permanent Commission for the South Pacific; SMA, State Maritime Authority of Azerbaijan; MRA, Peruv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REP,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al Program; ROCRAM, Operative Net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among Maritime Authorities of South America, Cuba, Mexico, and Panama.

들에서도 역내 당사국들에게 런던의정서를 홍보하고 있는데⁶³⁾ 이는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이 지역조약 회의를 통해 런던의정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신규 당사국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2010년 6월 현재 유엔의 회원국은 총 192개이다.⁶⁴⁾ 유엔은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 등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정치, 경제, 지리, 문화적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한 국가들 간의 대립은 세계 차원의 사안들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하기에 앞서 정치, 경제, 지리,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국가들이 지역그룹체제를 통해 당해 사안에 관한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그룹은 이러한 지역적 합의를 기초로 전체 회의에서 지역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유엔 기관들과 다자간 조약들은 조직 구성과 의사 결정, 그리고 토론 등에 있어서 당사국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과 각 지역그룹 국가들만 참여하는 지역그룹체제 방식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그룹체제는 본 소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인 런던의정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지역그룹체제는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구성을 위한 지리적 배분 기준을 제공해 주고 당사국들의 토론과 협상 창구로서 활용되며 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투표 불록을 형성해 런던의정서 관련 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지역그룹체제의 활동들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새로운 당사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의 당사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역할은 절차적 사항들에 대한 토론이나 준수그룹의 구성에만 주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런던의정서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당사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런던의정서의 물적, 인적 관할범위 확대에 있어서 당사국들 간의 협의, 투표 불록의 형성, 정보 공유 등 지역그룹체제의 역할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동북아 연안국들 중에서 러시아는 런던협약에만 가입한 상태이고 북한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지만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⁶³⁾IMO, 2007, Report of the Twenty-Ninth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econd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LC29/17, 49-51.

⁶⁴⁾<http://www.un.org/en/members/index.shtml> 참조. 2010년 6월 29일 방문. 한편, 유엔은 교황청(Holy See)과 팔레스타인을 총회 회의와 활동 등에 참관자로서 상시 참여하는 실체(Non-member States and Entities)로서 인정하고 있다.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지역국가들 간의 정치적 이질성이 심하여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역협력 체제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 (신[1989]).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구성한 황해 광역 생태계연구사업⁶⁵⁾의 경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발해만 (Bohai Bay)을 관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Chung[2009]).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역협력 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일본, 우리나라 등과 같은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 제도 및 정책적 이질성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제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위하여 정치적인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Kim[2010]).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발트해 국가들이 1974년에 체결했던 Helsinki 협약⁶⁶⁾은 좋은 선례를 제공해 준다. 즉, 덴마크, 핀란드, 서독, 동독,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 7개 발트해 연안국들은 정치적, 사상적 이념을 달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1974년 Helsinki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1992년 Helsinki 협약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비록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조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국가들이 1994년에 채택한 북서태평양환경계획⁶⁷⁾도 동북아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정[2006]).⁶⁸⁾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지역협력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지역그룹체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워크숍이나 관련 회의들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러시아가 동유럽 그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그룹체제는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북아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아시아 그룹의 논의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후 우리나라는 준수위원을 배출하고 여러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런던의정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런던의정서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그룹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런던의정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과 같이 엄격한 지역조약을 확립하여 런던의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지역그룹들의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 [1] 김기순, 2001,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3호, 109-137.
- [2] 김민수, 2008,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의 결과 및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제1274호, 1-7.
- [3] 백진현, 1999,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동향과 전망”,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01-122.
- [4] 백진현, 2005,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 제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3호, 123-144.
- [5] 신현덕, 1989,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법학회논총, 제34권 제1호, 173-186.
- [6] 정서용, 2006,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과와 과제”,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9권, 제2호, 120-129.
- [7] 홍기훈, 김한준, 박찬호, 2005, “이산화탄소 해저 지질 구조 격리 : 기술현황과 제도 예비검토”,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8권, 제4호, 203-212.
- [8] 홍기훈, 2006, “런던의정서 준수 절차와 기구”, 다자간환경협정의 준수 :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백진현, 홍기훈 편집, 정인아이앤디, 45-106.
- [9] 홍기훈, 2006,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제도와 투기해역 환경상태”, 다자간환경협정의 준수 :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백진현, 홍기훈 편집, 정인아이앤디, 107-204.
- [10] 홍기훈, 손효진, 2008,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1권 제3호, 138-149.
- [11] 홍기훈, 2009, “런던의정서와 우리나라”,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국제 동향 분석, 홍기훈 편집, 정인아이앤디, 1-9.
- [12] Bailey, S.D., 1964,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 A Study of Procedure and Practice, London : Pall Mall Press, 1-32.
- [13] Chung, S.Y., 2010, “Strengthening regional governanc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From a fragmented to an integrated approach”, Marine Policy, Vol.34, 549-556.
- [14] Kim, S.K., 2010, “Korean Peninsula Maritime Issu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41, 166-185.

⁶⁵⁾황해 광역생태계연구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YSLME)은 UNDP 지구환경기금의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1994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황해 광역 생태계 조사사업을 추진한 이래 2000년 YSLME 사업 계획의 승인에 따라 2005년부터 당해 사업이 착수되었다.

⁶⁶⁾1974년 Helsinki 협약의 정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Helsinki Convention, 1974”이다. 동 협약은 발트해 협약 혹은 헬싱키 협약이라고 약칭되기도 하는데 본 소고에서는 이를 1992년 Helsinki 협약과 구별하여 1974년 Helsinki 협약이라고 약칭하였다.

⁶⁷⁾북서태평양환경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은 UNEP 지역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북서태평양 해양과 연안 환경의 보호,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국가들에 의해 1994년에 채택되었다.

⁶⁸⁾우리나라는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와는 동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황해와 동해는 서로 직접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고, 또 각각의 자연 환경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4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해양 투기 방지를 위한 지역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황해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가 협력 체제를 각각 마련하고 추후 북한을 초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15] Kite-Powell, H.L., Hoagland, P. and Jin, D., 1998, "Policy, law and public opposition: the prospects for abyssal ocean waste disposal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ine Systems*, Vol.14, 377-396.
- [16] Jennings, R., 1999, "Opinion Regarding the Exclusion of Israel From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American Jewish Committee* (<http://www.ajcarchives.org/ajcarchive/DigitalArchive.aspx>).
- [17] Petersen, M. J., 1986, *The General Assembly in World Politics*, Boston : Allen & Unwin, 290-291.
-

2010년 7월 7일 원고접수

2010년 7월 28일 심사완료

2010년 7월 30일 수정본 채택